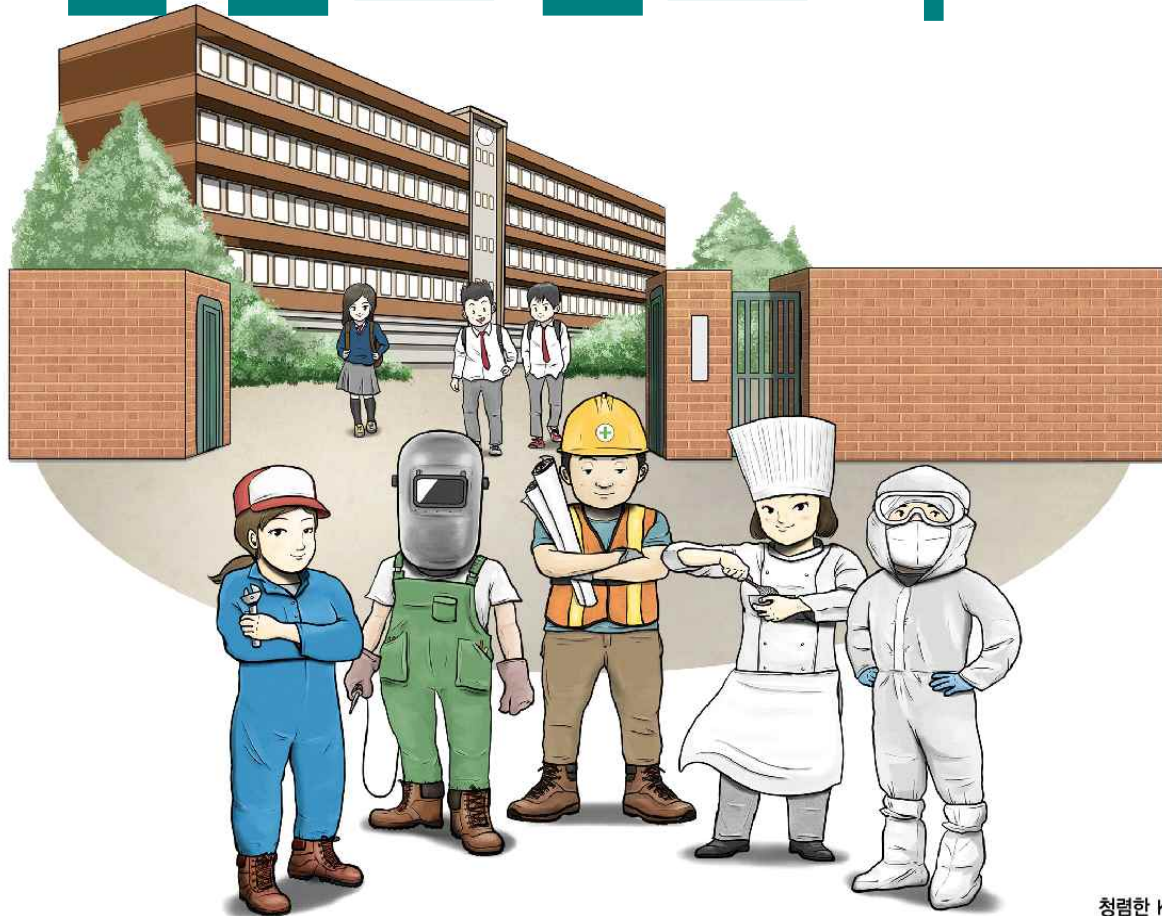


#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안전보건교육



#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생활을 위한 가이드

##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규정 등 준수

-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하고,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재해 예방은 단순히 회사 측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음. 근로자가 이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여야 함
-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권리도 갖지만 의무도 있음.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,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의무사항을 규정함
-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: 근로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안전을 이해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고가 예방될 수 없다는 취지

### 안전 **Tip**

####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무

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,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(법 제6조)



##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생활을 위한 가이드

### 올바른 작업 복장 착용

- 작업복 • 회사에서 정해진 복장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름
- 모 자 • 모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지저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긴 머리가 기계나 회전축에 말려 들어갈 위험 방지
- 장 갑 • 장갑은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끼는 경우도 있으나, 장갑을 끼면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져 일에도 영향을 주고 위험한 일도 발생할 수 있음  
작업특성에 따라 장갑 착용에 대해 주의해야 함
- 앞치마 • 작업 성질 상 위생, 유해요인 제거 등 앞치마를 사용하는 경우 앞치마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. (목도리 또는 스카프의 착용 시 말림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)
- 신 발 •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화를 착용. 슬리퍼, 샌들과 같은 벗겨지기 쉬운 것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허용안됨.
- 올바른 안전에서의 복장 :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,  
일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



#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생활을 위한 가이드

## 근로자의 권리



급박한 위험시  
작업중지 및 대피(제26조)

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.  
이 경우,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함



물질안전보건자료  
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
(제41조)

근로자 대표 등은 직업병 등 건강장애 발생 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MSDS에 적지 아니한  
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



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시  
결과에 대한 설명을  
요구할 수 있음  
(제42조)

근로자 대표 등은 화학물질(유기용제, 금속류, 산·알칼리, 가스, 금속가공유 등)을 취급하거나  
작업 과정에서 소음, 분진,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  
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. 근로자 대표 등은 직업병 등 건강장애 발생 시 취급하  
는  
화학물질의 MSDS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



안전보건활동  
참여권  
(근로자, 근로자 단체  
또는 노조)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·의결 또는 결정에 참여
-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·변경 시 동의
-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시 협의
-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시 입회
-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



사업주의 법 위반사실을  
신고할 권리

감독기관에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



#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생활을 위한 가이드

## 근로자의 의무

-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,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 (산업안전보건법 제6조)



**안전보건교육 이수**  
(제31조, 31조의2, 제41조)

근로자는 정기, 채용시, 작업내용 변경시, 특별작업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,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업주가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 또한 화학물질을 제조·사용·운반·저장작업 시 근로자 배치시, 새로운 화학물질을 도입한 경우, 유해성·위험성 정보 변경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(시행규칙 제92조의6)



**건강진단 이행**  
(제43조3항)

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,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에 진단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



**방호조치에 대한 준수사항**  
(시행규칙 제48조)

위험기계·기구에 설치된 방호조치에 대한 준수사항

-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: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
-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: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
-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: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



**지급하는 보호구 착용**  
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)

유해·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, 보안경, 보안면, 절연용 보호구, 방열복, 방진마스크, 방한모, 방한복, 방한화, 방한장갑, 승차 안전모 등을 착용하여야 함



#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생활을 위한 가이드

## ④ 소화기구

- 소화기가 놓여진 장소에는 표시판이 붙어 있다. 작업자는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함

## ⑤ 불이 났을때

- 불을 발견하면 큰소리를 낸다.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해서는 안됨
- 화재 보고는 가장 빠르게 한다. 전화연락 요령 및 비상연락망을 잘 기억할 것
-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부근의 스위치를 끄도록 할 것

##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



① 소화기를  
불이 난 곳으로  
옮긴다.



② 손잡이 부분의  
안전핀을 뽑는다.



③ 바람을 등지고 서서  
호스를 불꽃으로 향하게 한다.



④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 
빔자루로 쓸 듯이 뿌린다



#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생활을 위한 가이드

## 응급조치

### ▶ 구급조치의 일반적 주의사항

- 환자와 자신의 안전성 등 현장 현황 파악
- 호흡정지 등 우선순위를 파악 후 알맞은 처치 실시
- 무의식, 상태 위급 시 119에 도움 요청
- 주위의 협력을 요청하되 구체적으로 지시
-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용한 대화로 환자의 안정 유지
- 모포나 옷으로 체온 유지와 의식이 있는 경우 음료 준비
- 현장에 대한 관찰과 증거물 파악, 소지품 보존
- 모든 처치를 기록, 병원 이송 후 제시
- 환부 고정 등의 조치 후 주의하며 조용히 운반



### Check Box

자세한 응급조치에 대한  
궁금한 사항은  
“안전보건공단 앱”을  
설치하여 사용해 보세요!

##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생활을 위한 가이드

### 사고 발생시 대처 사항

- 당황하지 말고 심호흡을 한번 하기
-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을 것
- 어떠한 조치를 할 때는 그 조치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상해보기
-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신속하게, 그러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
- 될 수 있는 한 선배나 상사의 지시를 따라 행동
- 보통 순서를 무작정 바꾸지 않고 행동
- 부상을 입지 않은 사고, 어느 정도 작은 부상이라도 결코 숨기지 말 것





#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생활을 위한 가이드

안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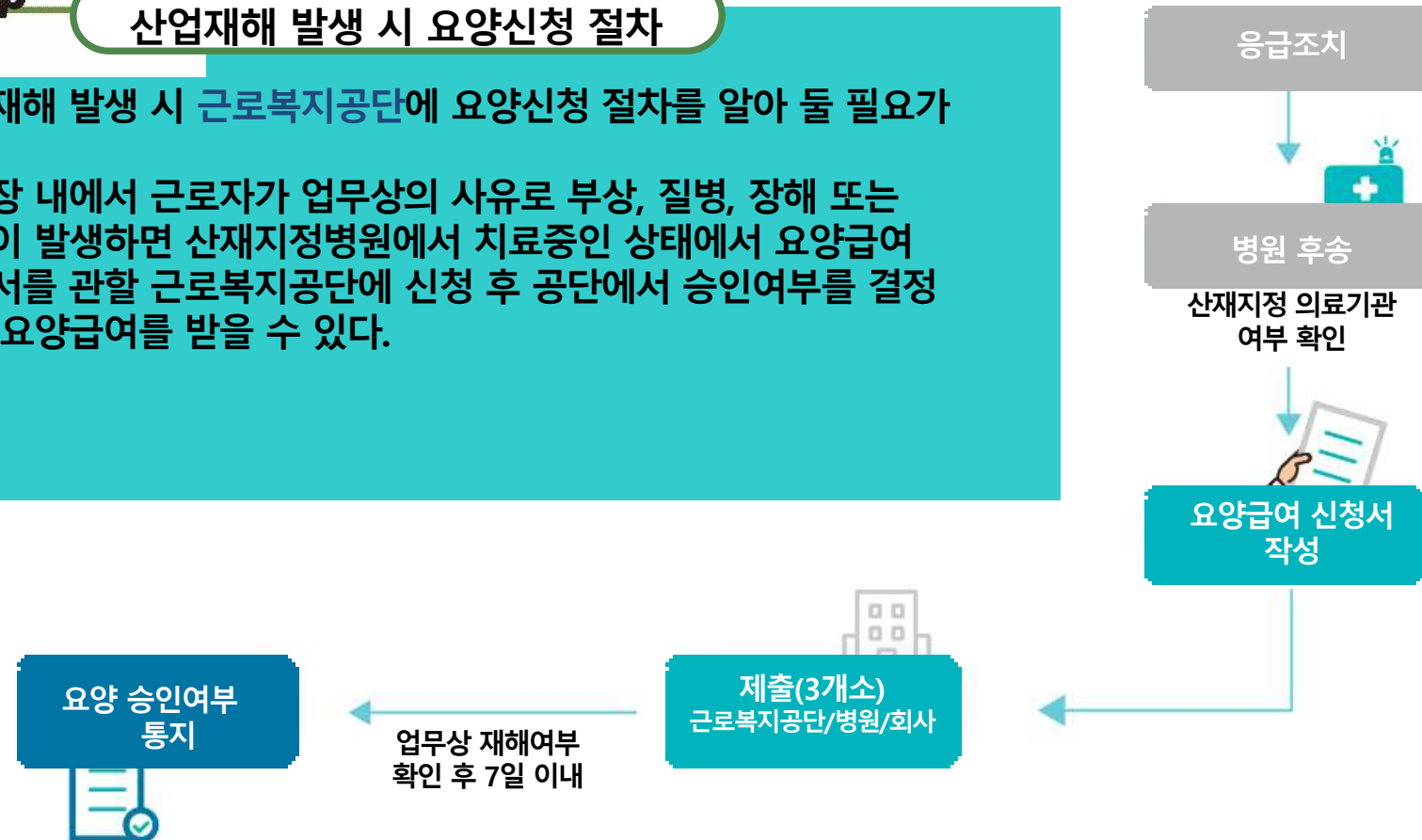
**Tip**

##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

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.

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, 질병,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 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## 요양 신청절차



감사합니다!